

전주지방법원 2019. 10. 18 선고 2019가단1317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

담당변호사 전휴정, 장재억

피고B

변론 종결2019. 10. 18.

판결 선고2019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답 4,517m'에 관하여 2005. 5. 31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허윤범

별지